

이천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

소관부서 : 행정지원과

제정 1996· 3· 1 규칙 제 12호
일부개정 2015· 11· 11 규칙 제571호
일부개정 2017· 8· 11 규칙 제603호
(이천시 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청원경찰법」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이천시에 배치한 청원경찰(이하 “청원경찰”이라 한다)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· 11· 11>

제2조(징계의 관할) 청원경찰의 징계 사건은 이천시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.

제3조(징계의 종류) 징계의 종류는 파면, 해임, 정직, 감봉 및 견책으로 하며, 징계의 효력은 「지방공무원법」을 준용한다.

[전문개정 2015· 11· 11]

제4조(징계의 처분) 이천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천시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 한다. <개정 2015· 11· 11>

1. 「청원경찰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
2.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
3.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

제5조(준용규정)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공무원 징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 <개정 2015· 11· 11, 2017· 8· 11>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· 11· 11 규칙 제571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·8·11 규칙 제603호, 이천시 공무원 징계의 양정에
관한 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생략

② 「이천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」 제5조 중 「이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
관한 규칙」을“ 「지방공무원 징계 규칙」 ”으로 한다.